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2003.10.24.(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10월 4일

○ 회부일자 : 2003년 10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3. 10. 20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박 환 규)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단체의 집적화로 단체간 협력체제를 구축, 상호 기능적 연계성을 강화, 「참여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과
- 청남대의 단순한 관리권만으로는 대청호를 비롯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자연친화적 테마공원을 조성함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재산중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울량동 1193번지의 1
- 사업규모 : 연 5,455㎡(1,650평)
 - 지하·옥탑 :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등
 - 1~3층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기기전시관, 물류창고 등
 - 4 층 : 사회복지단체 사무실(17개)
 - 5 층 : 대강당, 프로그램실, 도서관 등
- 사업기간 : 2003. 10 ~ 2005. 12
- 사 업 비 : 5,200백만원(국비 500, 도비 4,700)

◀ 청남대(국유)재산 부지 매입 ▶

- 위 치 :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산 40-1외 일원
- 사업규모 : 토지 330필지 1,844,843㎡(558,065평)
 - 총 북 : 277필지 1,290,442㎡
 - 대 전 : 53필지 554,401㎡
- 사업기간 : 2003. 10~12
- 사 업 비 : 3,000백만원(특별교부세)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만)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이는 건물을 신축하여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집적화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청남대의 토지를 취득하여 자
연 친화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청주시 상당구 을량동 소재 공유지(부지 6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연건평 1,650평) 규모의 종합사회복지센터를 52억(국비 5억원, 특별교부세 20억원, 도비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각종 사회복지단체를 입주시켜 주민의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고, 노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설치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센터의 건립은 필요할 것이나,

본 센터의 건립을 위한 재원대책과

현 입지여건을 감안할 때 장애자·노약자 진출·입에 따른 교통위험문제, 주차장 확보문제, 인근 주민들의 각종 불이익을 우려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임.

○ 《청남대(국유)재산 부지매입 사업》은

청남대를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대통령의 청남대 소유·관리권 이관지시에 따라, 청남대가 일반에게 개방되고, 청남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청남대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매입하려는 토지 중 대전시 소재 토지에 대한 매입방안과, 재정경제부로부터 1년간 무상대부 승인된 청남대 시설물에 대한 향후 대책과

청남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세부 계획별로 질의·답변, 심의의결

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 심사보류

나. 청남대(국유)재산 부지매입 : 승인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동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소재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지역 시의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도서관견립요구)을 수렴하고,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나,

대상 부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진입로폭 협소(왕복2차선)와 이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인한 집단민원의 우려와 인도가 없어 노약자·장애자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주차면적과 녹지 조성공간 부족 등이 예상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등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32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청남대의 단순한 관리권만으로는 대청호를 비롯한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 자연친화적 테마공원을 조성함에 한계가 있음으로 관련 재산중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재산의 취득

< 청남대(국유)재산 부지 매입 >

- 위 치 :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산 40-1의 일원
- 사업규모 : 토지 330필지 1,844,843㎡(558,065평)
 - 총 복 : 277필지 1,290,442㎡
 - 대 전 : 53필지 554,401㎡
- 사업기간 : 2003. 10~12
- 사 업 비 : 3,000백만원(특별교부세)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비 고
계	3,000,000				
침남대(국유)재산 부지 매입	3,000,000				

* 침남대(국유) 부지매입비는 감정평가 감안, 대장가격 대비 70%정도 증액

4.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 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1,844,843㎡ (558,066평)	3,000,000			
	건물						
	기타						
1	토지	청원 문의 신대 신40-1외 329필지	1,844,843㎡ (558,066평)	3,000,000	2003	청남대의 효율 적인 개발·관리	국 가
	건물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관계법령발췌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p>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8조(공유재산심의회)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무상양수,환자,무상귀속,교환,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양여,교환,무상귀속,건물의 멸실,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외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대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 2 ~ 5호 생략